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
운용계획 변경안  
(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59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관련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, 제16조
- 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

## 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가. 기금사업의 목표

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

- 나.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, 결산 금액 확정 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해당금액 적립 및 세수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전출 활용

## 5. 2023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가. 변경사유 :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증액

### 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〉

제5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결산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### 나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2년도말 조성액 ①	2023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3년도말 조성액 ④=①+②-③	증 감 ⑤=④-①	비고
		수입②	지출③			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7,779,596	497,829	0	18,277,425	497,829	기 회 예 산 과
		2,409,866	0	20,189,462	2,409,866	

### 다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3년도 말 조성액①	용자금 미회수 채권②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③	총 조성규모 ④=①+②-③
통합재정안정화기금	20,189,462	0	0	20,189,462

### 라. 자금수지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
항 목	경 정 액	기 정 액	증 감	항 목	경 정 액	기 정 액	증 감
합 계	20,189,462	18,277,425	1,912,037	합 계	20,189,462	18,277,425	1,912,037
전 입 금	1,912,037	0	1,912,037	예 치 금	20,189,462	18,277,425	1,912,037
예 치 금 수 회	17,779,596	17,779,596	0				
이 자 수 입	497,829	497,829	0				

- 수입계획 변경내역 : 일반회계 전입금 1,912,037천원 증액
- 지출계획 변경내역 : 예치금 1,912,037천원 증액

**〈참고〉 적립금 산정내역**

-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20년 (2019회계연도)	2021년 (2020회계연도)	2022년 (2021회계연도)	2023년 (2022회계연도)	최근3년('20~'22) 평균금액
71,523,177	62,636,657	82,837,415	127,618,993	72,332,416

- 산정방식 :  $(23 \text{ 순세계잉여금} - \text{최근3년 평균금액} \times 150\%) \times 10\%$ 
  - 1) 최근3년 평균금액의 150% : 108,498,624천원
  - 2) 결산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: 19,120,369천원
  - 3) 초과분의 10% : 1,912,037천원

## 6. 검토의견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과 각종 회계, 기금의 통합적 관리 추진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근거로 2021년도에 설치되었음.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의 2항 2호 규정에 의거 2022 회계연도 결산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%를 초과하여 그 초과분의 10%인 19억 1,203만 7천원을 전입금으로 증액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련법령 1부. 끝.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 
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영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

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9.]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[시행 2022.01.13.] (일부개정) 2021.12.31 조례 제1223호

**제5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** 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%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<개정 2021.12.31.>

2.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1.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

3.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


4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5.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5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